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2. 조치일 : 2026.9.16.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임 원	해당사항 없음
직 원 등	해당사항 없음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고령투자자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배치직원 관리 및 교육 강화

금융투자협회「표준투자권유준칙」은 고령투자자(65세 이상) 보호를 위해 각 영업점포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일정 근무연한 이상 직원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유안타증권㈜는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근무연한 등 직원 배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본점 차원에서 전담창구 직원의 명단 파악 및 주기적인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배치 직원에 대해 최소 근무연한 등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본점에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담창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 개발 시 고령투자자 위험요인 사전점검 강화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권유 유의상품’ 신규 판매 시 상품개발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 상품의 고령투자자 판매가 적합한지, 필수 안내사항이 있는지 등 위험요인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의 소비자보호부서는 신규 상품 출시 단계에서 상품설명서를 사전 심의하고 있으나,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시 체크리스트에 고령투자자 위험요인 점검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등 사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신규 판매 시 고령투자자 위험요인 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전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금전 보상 환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유안타증권㈜는 내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불완전 판매 등 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가 철회·해지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된 금전 보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금전 보상 환수에 관한 판단 주체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내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전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구체적인 금전 보상 환수 절차 및 환수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환수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투자권유 미희망 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데도,

유안타증권㈜는 ㉮ 등 상품에 대해 정책적으로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단순 중개하고 있으나, 투자권유 없이 직접 투자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별도로 고지하고 있지 않아,

이에 투자권유 미희망 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도록 설명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